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97
----------	-------

발의연월일 : 2018. 2. 20.

발의자 : 이상민·정성호·여기구

전재수·노웅래·이철희

유성엽·강창일·오제세

이종걸 의원(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임. 따라서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과학기술자료 등록·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5조에서 과학관 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자료 수집·보존·관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정의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등록기준과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유형(有形)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약)</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유형(有形)의 자료를 말한다.</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u>3. (생 약)</u></p> <p><u>&lt;신 설&gt;</u></p>	<p><u>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p> <p>②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